

의안 번호	63
----------	----

2022. 10.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년월일 : 2022. 10. 19.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에 두는 조직 중 부장, 반장의 직책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숙련된 의용소방대원 임명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원소방서가 의창과 성산소방서로 분리 개서됨에 따라 창원소방서지역연합회를 각각 의창·성산소방서지역연합회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 의용소방대원을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활동을 고려하도록 함

-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설치된 의용소방대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둠

나. 창원소방서지역연합회를 각각 의창·성산소방서지역연합회로 분리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1.~9. 21.) 결과: 제출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5) 직책 임명 기준 개정 권고 사항(소방청): 붙임 3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반장·부장의 임명 기준) 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장 또는 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7조 및 제13조의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창원소방본부·창원·마산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창원소방본부·의창·성산·마산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조의2(반장·부장의 임명 기준)</p> <p>① 시장 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장 또는 부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7조 및 제13조의 임무 수행 및 교육·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23조(설립) ① (생략)</p> <p>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창원소방본부·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u>창원소방본부·창원·마산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u>(이하 “소방서</p>	<p>제2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창원소방본부·의창·성산·마산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u>-----</p>

연합회”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중심의 안전가치에 일상의 안심을 더합니다.



소 방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필요에 따른 시·도 자치법규 개정 권고

1. 관련문서

- 가. 화재대응조사과-1529(2021.12.24)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안) 의견수렴 알림'
- 나. 화재대응조사과-528(2022.1.19)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신설(안) 의견수렴 결과 알림'
- 다. 화재대응조사과-801(2022.2.3)호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시·도 자치법규 개정(안) 의견수렴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도 의견수렴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시·도에서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 후 '22년 중 자치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정이유 : 숙련된 의소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붙임참조
- 다.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붙임 의소대원 직책 임용 기준 시·도 자치법규 개정(안) 알림 1부. 끝.

소 방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난대응과장), 부산광역시(방호조사과장), 대구광역시(예방안전과장), 인천광역시(119재난대책과장), 광주광역시(방호예방과장), 대전광역시(화재대응조사과장), 울산광역시(119재난대응과장), 세종특별자치시(대응예방과장), 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 대안과장, 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 충청북도지사(대응총괄과장),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 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예방대응과장), 창원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

담당 계장 화재대응조사과장 119대응국장 전결 2022. 3. 5.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1594 (2022. 3. 5.) 접수 대응예방과-3109 (2022. 3. 7.)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나성동) / www.nfa.go.kr

전화번호 044-205-7478 팩스번호 044-205-8986 / sampoo7788@korea.kr / 비공개(5)